

22.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정일 : 2009년 7월 22일

개정일 : 2016년 1월 29일

개정일 : 2020년 1월 22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의 전임교원의 업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전임교원의 업적을 공정하고 효율적이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임용, 승진, 업적 급여 및 포상 등에 적용함으로써 본교의 설립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수월성 유지와 연구의 질적 향상과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적의 영역)

전임교원의 업적의 영역은 연구 분야, 교육 분야,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 분야, 연구자 윤리 도덕 분야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기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1.29., 2020.01.22>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 교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전임교원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의 심사는 본교 교원인사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9.>
- ② 총장은 우수교수에게 포상(학술상) 또는 연구비 지급, 책임강의시간 경감, 별도의 유급 연구학기 부여 등을 지원한다.
- ③ 총장은 업적이 미진한 교수에게 연구비 삭감 등 업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평가위원회

제5조<본조 삭제 2016.1.29.>

제6조<본조 삭제 2016.1.29.>

제3장 평가절차

제7조(평가시기)

- ① 교수업적 평가는 12월 말일에 완료한다. 단, 신규 교원 등에 대해서는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29.>

제8조(평가절차)

- ① 재임용·승진 심사 대상 전임교원은 '교수업적자체평가서'(별첨 # 1)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교무처장에 제출한다. <개정 2016.1.29., 2020.1.22.>
- ② 교무처장은 제출된 '교수업적자체평가서'를 검토 후 '연구업적'과 '교육 및 학교발전에 대한 공헌 실적' 점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29.>
- ③ <삭제 2016.1.29.>
- ④ <삭제 2016.1.29.>

제9조(이의신청)

- ① 교수업적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교수업적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별첨 # 3)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
- 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교무처장은 즉시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해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송부하고, 교무처장은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1.29.>

제4장 평가방법

제10조(평가비율)

업적의 저자 수(혹은 참여자 수) 및 전공 관련도에 따른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다.

- ① 저자 수에 따른 평가비율은 n(총저자수)으로 나눠 산출한다.
- ② 전공 관련도에 따른 평가비율
 1. 교수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경우 100%
 2. 교수의 전공과 상당히 관련된 경우 70%
 3. 전공과 무관하지만 일반 신학의 경우 50%
 4. 전공과 무관하지만 일반 학문의 경우 30%
- ③ 업적과 관련하여 영향력이나 학문적 가치, 출연기관의 비중, 학교에 대한 발전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등급을 정하여 산출한다.

제11조<본조 삭제 2016.1.29>

제12조(평가 윤리)

- ① 평가는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출 자료가 학문적 윤리에 위반되었을 경우엔 네 분야 중 해당분야의 점수를 취소한다.
- ③ 평가 대상자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 및 오기, 혹은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의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연구업적 평가

제13조(연구업적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전공 관련 분야의 논문발표, 학술대회 등에서의 연구발표 등의 학술활동실적,

저술실적, 교외 연구 활동 등이 해당한다.<개정 2016.1.29.>

- ② 전공과 무관한 경우엔,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거나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발표, 학술대회 등에서의 연구 업적물 발표 및 연구 활동, 교외 연구 활동 등이 해당한다.<개정 2016.1.29.>

제14조(연구등급)

연구업적과 관련된 등급은 다음과 같다.

- ① <삭제 2016.1.29.>
- ② <삭제 2016.1.29.>
- ③ <삭제 2016.1.29.>
- ④ <삭제 2016.1.29.>
- ⑤ <신설 2016.1.29.> <개정 2020.1.22>

논문의 구분		배점의 구분
국내 학진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혹은 해외 학술지		논문 한편 당 40점
『한국신학』 혹은 『베뢰아논단』 등의 베뢰아권 학술지, 국내일반 학술지 및 출판물		논문 한편 당 20점
저작	전공 관련 저서 출판	단독 한편 당 50점 단독 외 한편 당 25점
	전공 번역서 및 편저서	단독 한편 당 50점 단독 외 한편 당 25점

제6장 교육업적 평가

제15조(교육업적 평가대상)

교육업적의 평가 항목은 강의(실습 포함), 논문지도, 학생에 대한 신앙 및 진로 지도(멘토링) 등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되, 가시적인 결과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첨 # 4)와 같다. <개정 2016.1.29., 2020.1.22.>

- ① 강의평가는 매학기 기본시수학점 강의 및 매학기 강의시간 준수여부, 수업계획서 제출, 전체적인 수업 평가 결과에 대해에 대해 평가한다.<개정 2016.1.29., 2020.1.22>
- ② <삭제 2016.1.29.>
- ③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의 논문지도 및 논문규정 준수(논문지도카드 제출)에 대해 평가 한다.<개정 2016.1.29., 2020.1.22.>
- ④ 학생지도는 멘토링 및 동아리 활동 지도에 대해 평가한다.<개정 2016.1.29.>
- ⑤ <삭제 2016.1.29.>

제16조<본조 삭제 2016.1.29.>

제7장 봉사업적 평가

제17조<본조 삭제 2016.1.29.>

제8장 학교발전업적 평가

제18조(평가대상)

학교발전에대한 공헌의 평가 항목은 학교홍보활동, 보직활동(본교 부서장, 부속 및 부설 기관장) 및 위원회 활동(교원인사위원회, 교무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 대해 가시적인 것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첨 # 4)와 같다. <개정 2020.1.22.>

- ① <삭제 2016.1.29.>
- ② <삭제 2020.1.22.>
- ③ <삭제 2020.1.22.>
- ④ 학교 홍보활동은 전기, 후기 신입생 모집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학술지 외에 사전,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좋은 글을 게재하거나 참여(혹은 우수 인물 등으로 선정되어)하고, 학교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것을 평가한다.<개정 2016.1.29., 2020.1.22>
- ⑤ 보직 활동은 본교 부서장, 부속 및 부설 기관의 장으로 활동한 것을 평가한다.<신설 2016.1.29., 개정 2020.1.22>
- ⑥ 위원회 활동은 교원인사위원회, 교무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위원장이나 위원으로서 활동한 것을 평가 한다. <신설 2020.1.22>

제9장 교육자 윤리도덕 평가<본장 신설 2020.1.22.>

제19조(교육자 윤리도덕 평가)

교육자 윤리도덕 평가 항목은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윤리와 도덕의식을 평가한다. 교원은 본교의 설립이념이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고,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한도에서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고 우선해야 한다. 본교는 교원의 이러한 윤리 의식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첨 # 4)와 같다.

- ①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일반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윤리와 도덕의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사고 또는 체제전복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의 시나 개인적으로 또는 외부에서 일반인에게라도 강의하거나 주입하는지 평가한다.
- ② 업무상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적절히 유지·관리 하는지 평가한다.
- ③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게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는지 평가한다.
- ④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게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에 대해 부적절하게 유포하거나 비난 및 차별행위를 하는지 평가한다.
- ⑤ 사적으로 행동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할 때에 대학이나 부설 기관을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평가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교수업적 자체평가서

성 명 :

심사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					
연구업적	120	국내 학진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혹은 해외 학술지 편 당 40점						
	100	『한국신학』 혹은 『베뢰아논단』 등 베뢰아권 학술지 국내일반 학술지 및 출판물 편 당 20점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저작</td> <td style="width: 40%;">전공 관련 저서 출판</td> <td style="width: 50%;">단독 편당 50점 단독 외 편당 25점</td> </tr> <tr> <td></td> <td>전공 번역서 및 편저서</td> <td>단독 편당 50점 단독 외 편당 25점</td> </tr> </table>	저작	전공 관련 저서 출판	단독 편당 50점 단독 외 편당 25점		전공 번역서 및 편저서	단독 편당 50점 단독 외 편당 25점
저작	전공 관련 저서 출판	단독 편당 50점 단독 외 편당 25점						
	전공 번역서 및 편저서	단독 편당 50점 단독 외 편당 25점						
교육업적	10	매학기 기본시수 학점 강의						
	10	매 학기 강의시간 준수						
	10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학생의 논문 지도						
	10	멘토링 및 동아리 활동 지도						
	10	수업계획서						
	10	수업평가						
학교발전 기여	10	보직 활동(본교 부서장, 부속 및 부설 기관 장)						
	10	본교 홍보 및 발전 관련 프로젝트 지원						
	10	위원회 활동(교원인사위원회, 교무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교육자 윤리도덕	100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윤리와 도덕의식 - 상식적인 사고 또는 체제전복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의나 개인적으로 또는 외부에서 일반인에게라도 강의하거나 주입하는 행위 - 업무관련 정보 비밀 발설 -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게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의 행위 -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게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에 대해 부적절한 유포, 비난, 차별 행위 - 사적인 행동 및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 대학을 대표하는 인상을 주어 오해하게 하는 행위						
계								

년 월 일

위 원 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첨 2] 교수업적 평정표 <삭제 2016.1.29.>

[별첨 3] 교수 업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개정 2020.1.22.>

교수 업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이의 신청자

구 분	승진 / 재임용 / 정기업적평가	소 속	
직 번		직 명	
성 명	(인)	제출일자	

▣ 이의 신청내용

순번	분야	항목	이의신청 내용

* 분야는 연구, 교육, 학교발전에대한 공헌, 교육자 윤리도덕 분야 중에 하나를 표기

* 기록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첨부로 작성 가능

교수업적 자체평가 평가 기준

심사항목	배점	평가내용
연구업적	120	국내 학진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혹은 해외 학술지 1. 편수 × 40점
	100	『한국신학』 혹은 『베뢰아논단』 등 베뢰아권 학술지 1. 편수 × 20점 국내일반 학술지 및 출판물
	100	저작 전공 관련 저서 출판 1. 단독: 편당 50점 2. 단독 외: 편당 25점 전공 번역서 및 편저서 1. 단독: 편당 50점 2. 단독 외: 편당 25점
교육업적	10	매학기 기본시수 학점 강의 1. 기본시수 강의 100% : 10점 2. 기본시수 강의 80% : 8점 3. 기본시수 강의 70%이하 : 5점
	10	매 학기 강의시간 준수 1. 평가기간의 평균 값 4.1 ~ 5점 : 10점 2. 평가기간의 평균 값 3.9 ~ 4점 : 8점 3. 평가기간의 평균 값 4점 이하 : 5점
	10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 1. 전체 지도 2명 이상 : 10점 2. 전체 지도 1명 : 5점
	10	멘토링 및 동아리 활동 지도 1. 멘티 학생 총 수의 평균값 20명 이상 : 10점 2. 멘티 학생 총 수의 평균값 10명 이상 : 5점 3. 멘티 학생 총 수의 평균값 10명 미만 : 3점 * 심사기준 학기가 홀수 일 때 학기수로 나눠 평균값 계산 * 심사기준 학기가 짝수 일 때 년수로 나눠 평균값 계산 * 멘티는 첫 학기 배정 후 1년 동안 지도해야하므로 학기로 계산할 경우 1년 동안 배정 받은 멘티 수 × 2를 한다.
	10	수업계획서 1. 수업계획서 미제출 과목당 -1점
	10	수업평가 1. 평가기간의 평균 값 4.1 ~ 5점 : 10점 2. 평가기간의 평균 값 3.9 ~ 4점 : 8점 3. 평가기간의 평균 값 4점 이하 : 5점
학교발전 기여	10	보직활동(본교 부서장, 부속 및 부설 기관 장) 1. 기관장 및 소장 : 연 2점
	10	본교 홍보 및 발전 관련 프로젝트 지원 1. 홍보참여 : 연 1회당 2점 2. 학술지, 사전,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글 게재 : 건당 5점 3. 프로젝트 : 보고서 1건 5점
	10	위원회 활동(교원인사위원회, 교무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1. 위원장 : 연 1회당 2점 / 2. 위 원 : 연 1회당 1점
교육자 윤리도덕	100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윤리와 도덕의식 - 상식적인 사고 또는 체제전복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의나 개인적으로 또는 외부에서 일반인에게라도 강의하거나 주입하는 행위 - 업무관련 정보 비밀 발설 -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게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의 행위 -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게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에 대해 부적절한 유포, 비난, 차별 행위 - 사적인 행동 및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 대학을 대표하는 인상을 주어 오해하게 하는 행위 1.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 물의를 야기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 항목의 사항으로(중복가능)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1회당 : - 25점